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10)

- 수출물품의 제조위탁을 중심으로 -

황원철 / 공정위 하도급기획과 사무관

I. 서론

제조분야의 하도급거래는 최종생산품의 수요처에 따라 내수용 물품의 제조위탁과 수출용 물품의 제조위탁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수출거래는 일반 내수거래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관세환급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에서는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내수용 물품을 제조위탁한 원사업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무·금지조항 외에 추가적인 의무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수출물품이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지원시책의 혜택이 하도급업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법 제7조), 물품수령증명서 교부의무(법 제8조제2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등의 규정이 수출물품의 제조위탁에 고유한 하도급법상 의무조항들로서 이번 호에서는 이들 규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II. 하도급법과 관련되는 주요 수출지원시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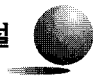
1. 내국신용장제도(Local L/C)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공급업체에게 대금결제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물품구매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국내업자간 지급보증제도이다.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산정한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 등의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무역금융제도

무역금융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



기관의 무역관련대출로서 물품이나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 등을 용자대상¹⁾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하는 수출금융지원제도이다.

3. 관세환급제도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제도를 말하는데, 동 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Ⅲ.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1. 도입취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의 규정취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에 의한 수출거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L/C거래에서는 외국 buyer와 수출업체간에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buyer는 수출업체가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이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증서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수출업체에 대해 개설해 준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업체는 ① 수출대금의 결제가 확실히 보장되어 국제무역을 촉진할 수 있고, ② 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의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내국신용장 개설 효과도 원신용장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에서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내국신용장 수혜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실히 보장받도록 하고,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수급사업자도 무역금융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의무의 내용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시 개설의뢰인인 원사업자로부터 ① 공급자인 수급사업자 발행 물품매도확약서, ②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등을 징구

1) 무역금융의 용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 및 비계열대기업(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준으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으로서 ①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③ ①~②의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 ④ 기타 외화획득,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정한 자 등이 된다.



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품구매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대신에 물품구매승인서를 원했거나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물품구매승인서로는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내국신용장 개설의무의 하도급법 규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3. 예외 인정사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IV. 물품수령증명서 교부의무

1. 규정이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대금 지급은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와는 달리 원사업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물품수령증명서와 수급사업자(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사업자(개설의뢰인)를 지급인으로 하는 내국신용장어음을 발행하고 외국환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물품수령증명서 교부행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에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로 하여금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한 것은 수출물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의무의 내용

하도급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납품사실·납품내역 등을 납품시점에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



국신용장이 개설된 거래에서는 물품수령증명서의 교부를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 과정을 거친 후에 즉시 물품수령증명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9조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물품수령증명서의 교부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 수출물품을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는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V.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1. 도입취지

수출업체인 원사업자로부터 완제품 및 중간원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받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필요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급사업자가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직접 또는 추가 가공하여 수출하고 난 뒤에 원사업자가 환급 신청하여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관세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는 수출업체인 원사업자가 받는 관세환급의 수출지원 혜택을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가. 관세 등 :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나. 환급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다. 수출용 원재료 :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 · 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

3. 의무의 내용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



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상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행 : 연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조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원사업자는 이중지급을 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하는데,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필요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인도하여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공정**

〈하도급법상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환급에 대한 흐름도〉

질 차		하도급법 규정	비 고
내 국 신 용 장 개 설	발주(제조위탁)	→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법 제7조)	
	물품매도확약서 제출(Offer Sheet)		
	내국신용장 개설(Local L/C)		
	목적물 수령	→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 교부 (하도급법 제8조제2항)	
	물품수령증명서 교부		
관 세 환 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제출	→ 60일 이내 환급상당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제2항)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지연이자(연리 25%)를 부담
	완제품 수출		
	원사업자의 관세 등 환급	→ 15일 이내 환급상당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제1항)	
	수급사업자에 관세 등 환급상당액 지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